

계약대상자 확인서 (은행보관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항목	확인내용					
가입자격	본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본인은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합니다.					
가입유형 관련 확인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또는 연장 시 유형별 기준 및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유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직전년도 ·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 소득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납입한도 **	총 1억원(기 가입한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하 단,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 이하이고, 미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입금 가능				
의무보유기간	3년					
계약기간	최초 가입 시 3년 이상 ~ 5년 이하, 연장 시 1년 이상 ~ 5년 이하					
* 농어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형 기준(비과세한도 등)으로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 입금 시점에 납입한도 초과 시 입금(자동이체 포함)이 불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입 또는 연장 자격 검증 관련 확인사항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계약 해지, 연장 불가, 감면세액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입 또는 연장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등재된 휴대폰 또는 최종 자택주소로 통보되며, 본인은 향후 은행에 등재된 자택주소와 연락처가 상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가입자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하나은행에 알려야 함을 확인합니다.					
해지, 중도인출 및 계약만기 확인사항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 해지로 보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전에 * 특별 해지 사유 외의 사유로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해지 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특별 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천재지변 ③ 가입자의 퇴직 ④ 사업장의 폐업 ⑤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⑥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⑩ 사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에는 매도시점이 없더라도 보유자산을 모두 매도하며 실제 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모든 자산이 매도되어 현금화된 시점 이후에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 후 연결계좌로 지급됨을 확인합니다. 이때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기와 운용자산 만기불일치로 인한 운용자산별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하며, 만기 당일에는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금액/납입한도(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보유한 경우 해당 저축을 포함)/중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및 계약기간 동안 납입한도 관리 등을 위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 인(서명)

(미성년자 부/모 대리 신규시 연서란) 대리인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계약대상자 확인서 (투자자보관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항목	확인내용					
가입자격	본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본인은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합니다.					
가입유형 관련 확인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또는 연장 시 유형별 기준 및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유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직전년도 ·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 소득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납입한도 **	총 1억원(기 가입한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하 단,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 이하이고, 미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입금 가능				
의무보유기간	3년					
계약기간	최초 가입 시 3년 이상 ~ 5년 이하, 연장 시 1년 이상 ~ 5년 이하					
* 농어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형 기준(비과세한도 등)으로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 입금 시점에 납입한도 초과 시 입금(자동이체 포함)이 불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입 또는 연장 자격 검증 관련 확인사항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계약 해지, 연장 불가, 감면세액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입 또는 연장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등재된 휴대폰 또는 최종 자택주소로 통보되며, 본인은 향후 은행에 등재된 자택주소와 연락처가 상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가입자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하나은행에 알려야 함을 확인합니다.					
해지, 중도인출 및 계약만기 확인사항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 해지로 보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전에 * 특별 해지 사유 외의 사유로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해지 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특별 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천재지변 ③ 가입자의 퇴직 ④ 사업장의 폐업 ⑤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⑥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⑩ 사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에는 매도시점이 없더라도 보유자산을 모두 매도하며 실제 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모든 자산이 매도되어 현금화된 시점 이후에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 후 연결계좌로 지급됨을 확인합니다. 이때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기와 운용자산 만기불일치로 인한 운용자산별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하며, 만기 당일에는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금액/납입한도(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보유한 경우 해당 저축을 포함)/중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및 계약기간 동안 납입한도 관리 등을 위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 인(서명)

(미성년자 부/모 대리 신규시 연서란) 대리인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